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법원감정측량 유착관계 진위조사 요청 건-

- 감사기간: 2015. 6.29.(월)~2015. 7. 2.(목) / 3일간
- 감사인원: 2명
- 지적사항: 없음

2015. 7.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목적	1
2. 진정인 / 피진정인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방법	1
II. 감사결과	1
1. 총평	1
2. 조사내용	2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2
2) 진정인 면담	2
3) 측량집행 내역	3
4) 세부 조사내용	3
4. 감사자 의견	15
III. 처분요구 사항	15
[붙임] 진정에 대한 회신문 1부.	1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이번 특정감사는 진정한 문●●(대리인 이■)로부터 손해배상금 소송 관련 “법원감정측량 유착관계 진위조사 요청”의 진위 확인 및 부당함 해소를 목적으로 함

2. 진정한 / 피진정한

- 진정한: 문●●(진정한), 이■(진정대리인)
- 피진정한: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급 박◆◆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5. 6. 29.(월) ~ 2015. 7. 2.(목) / 3일간
- 감사반 : 감사실 국토정보직○급 ◆◆◆, 국토정보직○급 ○○○

4. 감사방법

- 진정한 면담 및 관련 직원 사실관계 확인
- 경위서 징구 및 문답서 작성
- 전화통화 기록 및 관련 서류 조사 등

II

조사결과

1. 총평

- 이번 특정감사는 토지거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법원감정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측과 피진정한 사이에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진정이 있어서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2015. 5. 11. ~ 5. 20. 사이에 피진정인과 피고측간에 전화 통화한 기록이 없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과 검찰에 수사의뢰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사를 시작하였음

- 진정내용에 대해 관련자 8명에게 문답 또는 질문·전화통화 및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한 결과 진정내용의 일부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그밖에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진정대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 피진정인과 피고측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진정인 측에서도 근거자료를 제시 하지 못했음

2. 조사내용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조사방법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급	박◆◆	문답	피진정인
	국토정보직○급	이◇◇	경위서	현 지사장
	국토정보직○급	김◆◆	문답	팀원
	담당관	안★★	전화질문	전임 지사장
	국토정보직○급	선☆☆	경위서	서무담당
	국토정보직○급	최◎◎	전화질문	2013년 접수담당
	국토정보직○급	최흠흠	전화질문	현재 접수담당
■■■■사무소 ◎◎◎◎팀	주무관	박◎◎	전화질문	5. 20. 법원감정측량 당시 현장 입회

2) 진정인 면담

- 일자: 2015. 6. 29.
- 장소: □□북도 ○○시 ■■■면 ☺☺리 ***-3 ■■■■■■■■■ 펜션
- 면담자: 이■(이하, 진정대리인이라 함)

3) 측량집행 내역

○ 토지소재: □□북도 ○○시 ■■■면 ☺☺리 ***-3

신청인	측량일시	종 목	지 번	측량자	비 고
최♠♠	‘12. 11. 13.	분할측량	***-2	최♥♥	피고
최♠♠	‘12. 12. 13.	분할측량	***	박♣♣	피고
문♣♣	‘13. 5. 6.	경계복원	***-3	신♣♣	원고
안♠♠ (‘13. 11. 5. 본인취소)	‘13. 9. 23.	분할측량	***-1	박♦♦	피고
■■■■■공사	‘14. 8. 22.	지적현황	***-3	우♥♥	
■■■■■공사	‘14. 9. 15.	분할측량	***-3	우♥♥	

4) 세부 조사내용

진정 내용 1

○ 2013. 10. 경

- 문♣♣가 신청한 ■■■면 ☺☺리 ***-3번지의 경계복원측량을 피고측 최♠♠와 안♠♠의 말 한마디에 임의로 취소한 이유

○ 피고측 안♠♠가 2013. 9. 16. 분할측량을 신청(☺☺리 223-1 분할제###호) 하였으나 “이해인과의 분할선 미협의” 로 인해 2차례 연기 했다가 2013. 11. 5. “건축취소로 분할사유가 없어짐” 이라는 사유로 신청인 안♠♠가 취소함

○ 접수담당 직원에 따르면 해당지가 성과차이가 있어 민원이 예상되어 경계복원측량 접수를 이미 접수된 분할측량(2013. 9. 16.) 결과에 따라 차후 접수하는 것으로 진정한 및 진정대리인에게 설명하였으나 분할선 미 협의로 분할측량이 두 차례에 걸친 연기 후에 취소되면서 경계복원측량 접수 기회가 없어짐

- 진정대리인이 피고측의 취소 요청으로 측량을 취소한 것에 대해 당시 지사장에게 항의하여 다음날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경계복원측량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진정대리인이 측량성과가 상이한 것을 당시 지사장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여 부득이 새로운 팀장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해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측량을 해주게 한 적이 있었음

조사 결과 1.

- 2013. 4. 24. 진정인이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서 신청인과 피고측이 입회한 상태에서 측량을 완료 한 적이 있으나
- 2013. 6. ~ 2013. 12.까지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에서 측량 접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해당지와 관련한 경계복원측량 신청 내역뿐만 아니라 상담한 내역이 없음
 - * 상담만 한 경우에는 접수가 된 것이 아닌 관계로 대부분 별도의 취소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본 건은 그런 상담내역도 없음
- 성과차이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지사장의 명을 받아 경계복원측량을 한 적은 있었으나 측량 취소를 무마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무료로 했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음
- 진정대리인은 피진정인이 피고와 싸고 측량을 취소한 것으로 진정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진정대리인이 주장하는 피고측의 요청으로 경계복원측량을 취소했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함

진정 내용 2.

- 2015. 5. 11.
 - 피진정인은 법원감정 현장 검증 시에 부장판사에게 피고 최♣♣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며 지적도가 인쇄된 A₄용지를 꺼내서 보여주며 제대로 지적측량이 된 곳이기 때문에 측량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

- 피진정인에 따르면 지적도 사본은 현장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참했을 뿐 “측량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피진정인이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에게 증빙할 만한 자료(증언) 등을 요청하였으나 확보하기 어려워 제출 못함

조사 결과 2.

- 진정내용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진정 내용 3.

- 2015. 5. 11.
 - 문●●가 다음 측량기일이 언제쯤이냐고 질문하자 “일이 많이 밀려서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대답하였는데 한 달 정도나 기다려야 될 만한 일 꺼리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여부

- 2015. 5. 11. 현재 미결업무 현황이 총 243건 중 일반업무 183건

• 인력현황

현 원	측량팀	측량인력운용	필수인원	비 고
18	5	15	3	1팀: 2015 지적재조사 1팀: 서면업무 집행 3팀: 일반업무 집행

• 미결업무 현황(2015. 5. 11. 현재)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합 계	243	1,955	719,966	
일반업무	183	354	121,602	
특수업무	60	1,601	598,364	특수+부대

• 업무처리 예상 기간

1일 평균 처리 건수	운용팀 수 (일반업무)	1일 처리 가능 건수	미결 건수 (일반업무)	처리 소요일수	비 고
3.1건	3팀	9.3건	183건	19.7일	

○ 5. 11. 기준 ○○지사 미결업무 처리 예상 기간

- □□지역본부 5월 중 1일 1팀 평균 일반업무 처리건수 3.1건*

* □□지역본부 주(週) 단위 평균 처리건수의 4주 평균치

- 일반 업무 운영 가능한 3팀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소요 예상 일수를 계산한 결과 위 표에서와 같이 약 20일 소요예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측량기간 5일 보다 약 4배나 더 업무 지연

○ 2015. 5. 11.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일반업무 접수가 총10건이 접수 되었으며 6. 1. ~ 6. 3. 까지 배정되어 약 20일 정도 지연

○ 인력지원 요청

- 권역별 인력지원 요청으로 ▲▲지사에서 1팀(3명) 5일간 업무지원

지원지사	지원일자	인원	실적	단축일수
▲▲지사	2015. 5. 18. ~ 2015. 5. 22.(5일간)	1팀(3명)	총17건/27필	약 6일

* ○○지사-2769 / 2015. 5. 12.

- 인력지원으로 약 6일간 일반 업무가 단축되었으며 5. 11. 업무수행계획서상 특수업무 일정이 5. 20 ~ 5. 21.까지 배정됨

조사 결과 3.

- 접수현황 및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조사 결과 6월 초까지 업무가 지연되고 있었음
- 따라서 ▲▲지사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 일반 업무를 약 6일 정도 단축함으로써 특수 업무를 주로 하는 피진정인의 경우 일반 업무 지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며,
- 당초 4. 23. 지적측량수행계획서의 측량 완료일인 5. 20. 정상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난 4.23. 지적측량수행계획서의 측량일정(5.11. ~ 5. 20.)을 측량 전에 미리 확인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시일이 좀 걸린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됨

진정 내용 4.

- 법원감정 현장 검증에서 피고 최순순, 피고측 변호사 장○○○○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1미터 5센티를 기점으로 잡아 측량 감정해야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여부
- 피진정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감정인으로서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조사자가 진정인 측에 증빙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원·피고측을 제외한 참석자들이 대부분 법원에서 참석한 분들로서 증명요청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함

조사 결과 4.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이하며 진정내용을 증빙할 근거가 없음

진정 내용 5.

- 판사가 “만일 측량이 늦어지면 재판기일을 연기하라” 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20일이나 앞당겨 2015. 5. 20. 피고 최♣♣와 함께 나타나 측량감정을 거의 끝내 놓고 이▣▣를 부른 이유
 - 피진정인은 판사의 “측량이 늦어지면 재판기일을 연기하라” 는 얘기를 듣지 못함
 - 20일을 앞당겨 측량을 실시한 것은 5. 11. 현장을 다녀와서 업무를 확인해 본 결과 업무처리 기한이 초과되어 인근 ▲▲지사에 업무지원 요청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5. 20. 측량 할 수 있었음
- * 권역별 인력지원 요청 ○○지사-2769(2015. 5. 12.)
- 5.20. 측량실시 중 진정대리인에게 찾아 가서 측량을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측량 현장으로 돌아와 이어서 측량을 하던 중에 피고 최♣♣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왔지 같이 측량 현장에 도착한 것이 아님
 - 피진정인은 측량진행 과정에서 측량 당일 오전에 진정대리인이 사무실로 측량일시를 전화로 문의했던 것이 생각나서 진정대리인을 찾아가 얘기를 했음

조사 결과 5.

- 판사의 재판기일 연기와 피진정인이 피고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은 상호간에 의견이 상이하며 증빙자료가 없어 명확히 밝히기 어려움
- 피진정인이 진정대리인을 부른 이유는 측량 당일 오전에 진정대리인이 측량일시를 묻는 전화를 사무실로 했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연락했으며 현장 측량업무 진행 중에 연락을 하였으며 고의로 측량이 끝날 무렵에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진정 내용 6.

- 이▣▣를 불러 놓고도 이▣▣가 측량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묻자 “알거 없다. 지난번에 공짜로 측량해 줬는데 뭐가 궁금하냐?” 며 현장을 떠난 이유
- 피진정인은 지난 5월 11일 현장감정시에 판사가 지시한 바위중앙 백색페인트 표시부분과 도로 밑 화단에 조그마한 돌이 있는데 폭 파인 부분으로 측량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 이▣▣가 하천 쪽 경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측량을 신청해야 경계를 표시할 수 있으며, 지난번에도 무료로 측량해 줬다고 얘기하자 “당신들이 반환해주지 않았냐?” 며 버럭 화를 냈다고 답변함

조사 결과 6.

- 동석했던 ㉡㉡㉡사무소 직원의 답변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알 것 없다. 지난번에 공짜로 측량해 줬는데 뭐가 궁금하냐?”라고 까지 심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다소 무뚝뚝하게 답변한 것으로 조사됨

조사 결과 6.

- 전반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그렇게 많은 대화를 주고 받지는 않았으며 ㉠㉠㉠사무소 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나서 그 후에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 상호간의 답변이 상이하며 ㉠㉠㉠사무소 직원이 중간에 자리를 먼저 떠난 관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진정 내용 7.

- 피고 최♠♠와 거의 동시에 측량감정현장에 도착하게 됐는지 서로의 통화내역이 궁금함

- 2015. 4. 1. ~ 6. 25. 까지 지사 전화 3개회선 통화 기록 조사
- 2015. 4. 1. ~ 5. 31. 까지 피진정인 및 팀원 2명의 핸드폰 통화 기록 조사

<통화기록 횟수>

(단위: 통)

구 분	합 계	4월	5월	6월	비 고
합 계	3,958	2,028	1,695	235	
박◆◆	656	328	328	-	
김◆◆	367	217	150	-	
박●●	149	71	78	-	
0**) 6**-4***	929	493	429	7	
0**) 6**-4***	451	220	176	55	
0**) 6**-4***	1,406	699	534	173	

- 피고를 포함한 총5명(최♠♠, 장㉠㉠, 안♠♠, 이㉠㉠, 김●●)의 전화번호(15개) 조사
- 피진정인이 4. 29. 김●●(건축업자)와 핸드폰으로 37초간 통화하였으며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함
- 또한 피진정인은 5. 7. 피고 최♠♠와 사무실 전화(0**-6**-4**)로 3분20초간 해당지의 하천부지 면적을 알려달라는 내용에 대해 통화하였으며 “현황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고 통화 한 것으로 답변함

조사 결과 7.

- 당초 진정인이며 원고 문●●는 법원감정 현장 검증일인 5. 11. 부터 현장측량을 했던 5. 20. 사이에 피진정인이 피고측과 통화 기록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5. 7. 피진정인이 피고와 통화한 기록을 문제 삼고 있으나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의 답변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진정 내용 8.

-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나 이▣▣에게 연락하여 공정하게 참석케 하여 측량감정하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데 눈에 거슬릴 정도로 왜 회피하고 알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
- 피진정인은 원고나 피고 측에게 측량일시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고를 우연히 만난 시점은 현장에서 측량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현장에 어떤 여자 분과 함께 오후에 도착해서 만나게 되었음
- 원고 측과는 진정대리인이 ○○지사로 전화하여 문의하였고 서무업무 담당자가 현장 팀에게 확인하여 당일 오후임을 전달했음

「지적업무처리규정」[별표 제2호] 법원감정측량 처리절차 3. 공통사항
나. 법원감정측량성과는 감정을 요청한 법원외의 원·피고 등 이해관계
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사 결과 8.

- 피진정인은 별도로 원고나 피고에게 측량 일시에 대하여 사전에 연락한 적이 없었으나 피진정인이 현장을 측량하다가 오전에 측량 시간을 묻는 전화가 사무실로 온 것을 기억하고 진정대리인에게 측량하러 왔음을 알렸음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2호] 법원감정측량 처리절차에 따르면 “법원감정측량성과는 감정을 요청한 법원외의 원·피고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에 법원감정 현장 검증에서 판사가 지정한 측량내용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에게 사전에 측량 일시를 통보하거나 측량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법원감정측량 수행 시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원고나 피고에게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측량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진정 내용 9.

- ○○지사 여직원은 측량감정기일과 시간을 문의하는 문●●와 이■■에게 측량감정기일과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이유
- 2015. 5. 20. 10:00 ~ 11:00 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분으로 부터 법원감정측량을 몇 시에 하는지 문의전화가 와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고 말씀드린 후 측량 팀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오후 예정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전화해서 오후에 측량 예정이라고 전달함
- 또한 같은 날 16시 경 남자분이 전화를 하여 시간을 왜 오후라고만 말해줬는지 정확한 시간을 일부러 말 안 해준 것 아니냐는 등의 전화를 함

조사 결과 9.

- ○○지사 전화통화기록을 조사한 결과 서무직원의 경위서 내용과 같은 시간대인 10:47에 사무실 전화로 진정대리인에게 전화 통화한 기록(14초)이 있어 오후에 현장에 갈 예정이라고 전달했다는 서무직원의 답변과 일치함

진정 내용 10.

- 의구심이 생겨 항의하는 문○○와 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서둘러 측량감정인을 바꾼 이유
- 2015. 5. 21. 진정대리인이 지사장에게 전화로 감정인을 불신하여 지사장이 감정인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음
- 진정대리인이 감정인을 즉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법원에 연락하여 감정인 변경을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언제 변경할 것인지 여러 차례 독촉전화를 함
- 법원에서 감정인 변경을 바로 승인하였으며 진정대리인의 여러 차례 독촉하여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직접 접수(5. 22.)하여 기간을 단축함

조사 결과 10.

- 진정대리인의 변경 요구 및 수차례에 걸친 독촉전화에 따라 법원과 신속히 변경을 협의하였으며 법원에 방문 접수하여 접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법원으로부터 2015. 6. 2. 감정인 지정취소가 결정됨

진정 내용 11.

- 5. 20. 피진정인의 측량도면이 지적도와 상이하게 조작되었으니 확인 요청
- 해당지 주변 최근 CIF(지적도)파일을 ○○시로부터 제공받아 2012. 11. 13. 분할측량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분할선 정리에 이상이 없었으며 2015. 5. 20. 피진정인이 측량할 때 사용한 현황 파일에 있는 지적선도 일치함
- 5. 20. 감정측량 당시 진정대리인이 측량기계 가까이 접근하려고 할 때 팀원이 측량기계를 나무로 된 테라스에 설치한 관계로 불안정하니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양해 구함

조사 결과 11.

- 2015. 5. 20. 감정측량 당시에 사용했던 현황측량도의 지적선을 2015. 7. 20. ○○시 ○○○○과로부터 제공받은 CIF(지적도)와 비교해 본 결과 지적선과 일치함
- 2015. 5. 20. 감정측량 당시 진정대리인은 현황측량을 하고 있는 펜컴퓨터 가까이 갈 수 없어서 현황측량도를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진정대리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이 현황측량도면을 조작했다는 진정내용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됨

진정 내용 12.

- 2014. 12.에 신청한 법원감정측량을 5개월이 지난 2015. 5. 11.에 법원감정 현장검증을 한 이유
- 2015. 4. 9. □□지방법원 ○○지원에서 보내온 감정인 출석요구서에 2015. 4. 27.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지원에서 2015. 5. 11.로 감정기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변경기일통지서를 2015. 4. 23. 보내왔음

조사 결과 12.

- 2015. 5. 11. 법원감정 현장 검증은 법원으로부터 일자 통보 및 기일변경요청에 의해 정해진 날짜로서 해당지사에서나 피진정인에 의해 정해진 날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됨

4. 감사자 의견

- 피진정인이 피고를 알게 된 것도 해당지(☺☺리 ***-3)의 측량성과 차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진정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대면하기가 불편한 관계였으며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피고와 유착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법원감정측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측량일정을 법원에만 통지하고 원고와 피고에게는 알리지 않고 측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원고나 피고에게 친절히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오히려 서로에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는 업무임
- 본 조사에서 일부의 진정내용은 사실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진정대리인 또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그러나 일부의 진정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피진정인에 대해 별도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조사 결과를 회신한 후 종결하고자 함

Ⅲ

처분요구 사항

- 처분요구 없음

【붙임】 진정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붙임】

□ 진정에 대한 회신문

수 신 : 문●● 귀하(□□북도 ○○시 ■■■면 ☺☺리 ***-3)

제 목 : 진정에 대한 회신

1. 항상 우리 공사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그밖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진정 내용 1.

2015. 5. 11. 당시 측량일정을 한 달 정도나 기다려야 될 만한 일 꺼리가 있었는지 여부

조사결과) 5. 11. 미결업무 조사결과 6월 초까지 업무가 지연되고 있었음

진정 내용 2.

피고 최♣♣와 거의 동시에 측량감정현장에 도착하게 됐는지 서로의 통화내역이 궁금함

조사결과) 4. 29. 김●●씨, 5. 7. 최♣♣씨와 통화한 내역이 있음

진정 내용 3.

공정하게 참석케 하여 측량감정하고 설명해 줄 의무

조사결과) 「지적업무처리규정」[별표 제2호] 법원감정측량 처리절차에 따르면 법원감정측량성과는 감정을 요청한 법원외의 원·피고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진정 내용 4.

○○지사 여직원은 측량감정기일과 시간을 문의하는 원고 측에게 측량감정기일과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이유

조사결과) 2015. 5. 20. 10:47 10:47 ○○지사(0**-6**-4**)에서 이■□씨 핸드폰으로 전화 한 기록이 있음

* 10:45 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분으로 부터 법원감정측량 일시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고 현장 팀에 확인하여 당일 오후에 현장에 간다는 내용을 10:47에 회신함(회신번호: 0**-3**-4**)

진정 내용 5.

의구심이 생겨 항의하는 문●●와 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곧바로 서둘러 측량감정인을 바꾼 이유

조사결과) 원고 측에서 감정인을 즉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감정인 변경을 약속한 이후에도 원고측에서 여러 차례 독촉전화를 하여 변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감정인 변경 문서를 우편접수가 아닌 인편으로 접수함

진정 내용 6.

5. 20. 피진정인의 측량도면이 지적도와 상이하게 조작되었으니 확인 요청

조사결과) 5. 20. 피진정인의 법원감정측량도면의 지적선 조작을 조사하기 위해 ○○시청에 현재 지적도 파일을 요청하여 조사한 결과 지적도와 일치함

진정 내용 7.

2014. 12.에 신청한 법원감정측량을 5개월이 지난 2015. 5. 11.에 법원감정 현장검증을 한 이유

조사결과) 2015. 4. 9. □□지방법원 ○○지원에서 보내온 감정인 출석요구서에 2015. 4. 27.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지원에서 2015. 4. 23. 변경기일 통지서를 ○○지사로 보내 2015. 4. 27.에서 2015. 5. 11.로 감정기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음. 끝.